

의안번호	2209487
의 퇴 인	양부남 의원
회 답 일	2025. 6. 11.
추 계 번호	25F199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업부설연구소,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, 산업단지 등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3,237억원, 2030년 3,196억원 등 2026~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6,076억원(연평균 3,21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191.7억원(연평균 -38.3억원)
 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250.5억원(연평균 -50.1억원)
 -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40.5억원(연평균 -8.1억원)
 -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-376.2억원(연평균 -75.2억원)
 -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: 5년간 -1,970.1억원(연평균 -394.0억원)
 -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의 개발·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5년간 -74.5억원(연평균 -14.9억원)
 -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등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: -357.5억원(연평균 -71.5억원)
 -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: -12,815억원(연평균 -2,563억원)
 -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78조제3항)은 2024년 시행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지방세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 -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지방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(안 제46조제1항)	-37.0	-37.6	-38.3	-39.0	-39.7	-191.7	-38.3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(안 제46조제2항)	-47.6	-48.8	-50.1	-51.4	-52.7	-250.5	-50.1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(안 제46조제3항)	-8.1	-8.1	-8.1	-8.1	-8.1	-40.5	-8.1
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(안 제46조제4항)	-74.0	-74.6	-75.2	-75.9	-76.6	-376.2	-75.2
산업단지 등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(안 제78조제1항)	-389.8	-391.9	-394.0	-396.1	-398.3	-1,970.1	-394.0
산업단지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(안 제78조제2항)	-17.6	-16.0	-14.7	-13.6	-12.7	-74.5	-14.9
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등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 동산에 대한 감면(안 제78 조제3항)	-74.2	-72.5	-71.2	-70.1	-69.3	-357.5	-71.5
사업시행자 외 산업단지 등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(안 제78조제4항)	-2,588.4	-2,575.2	-2,562.5	-2,550.4	-2,538.7	-12,815.0	-2,563.0
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중과 배제(안 제78조제9항)			미첨부	1호			
합 계	-3,236.7	-3,224.7	-3,214.1	-3,204.6	-3,196.1	-16,076.0	-3,215.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제1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2	안 제46조제2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
3	안 제46조제3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4	안 제46조제4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-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(개정안) 2030.12.31.	
5	안 제78조제1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-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6	안 제78조제2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-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·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7	안 제78조제3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-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8	안 제78조제4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-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9	안 제78조제9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-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 중과 배제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6조제1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2	안 제46조제2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3	안 제46조제3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4	안 제46조제4항 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
5	안 제78조제1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6	안 제78조제2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7	안 제78조제3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8	안 제78조제4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9	안 제78조제9항 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	×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(안 제46조제1항)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16.6억원에서 2022년 23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.7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5.5억원
 - (재산세) 2020년 17.9억원에서 2023년 19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: 3.1%
- (안 제46조제2항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0년 3.3억원에서 2023년 31.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3.6억원
- (재산세) 2020년 27.5억원에서 2023년 30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: 3.6%
- (안 제46조제3항)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3년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 취득세 감면액: 7.9억원
 - (재산세) 2023년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 재산세 감면액: 0.2억원
- (안 제46조제4항)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52.4억원에서 2023년 80.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59.1억원
 - (재산세) 2020년 11.4억원에서 2023년 12.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: 4.0%
- (안 제78조제1항) 산업단지 등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19년 286.8억원에서 2022년 332.1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58.4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276.1억원

- (재산세) 2019년 100.3억원에서 2023년 107.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1.8%
- (안 제78조제2항)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·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19년 8.6억원에서 2020년 12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(2022년 4.6억원)하여 2023년 9.2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8.5억원
 - (재산세) 2019년 35.3억원에서 2023년 16.3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-17.6%
- (안 제78조제3항)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19년 55.9억원에서 2021년 120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68.7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66.7억원
 - (재산세) 2020년 36.0억원에서 2023년 16.5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-22.9%
- (안 제78조제4항)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19년 1,905.3억원에서 2022년 3,242.2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1,951.3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2,244.1억원
- (재산세) 2019년 452.2억원에서 2023년 386.9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-3.8%
- (안 제78조제9항)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 중과배제는 2024년 시행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향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46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 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35% 감면
 -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 (2020년 이후 추가 감면 시행, 2020~2022년은 취득세 및 재산세 45% 감면, 2023년 이후 50%로 감면율 확대)
- (추계방법)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0년 16.6억원에서 2022년 23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.7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5.5억원
- (재산세) 2020년 17.9억원에서 2023년 19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3.1%

[표 2]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0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34.5	39.8	44.8	21.3
- 취득세	16.6	20.3	23.5	1.7
- 재산세	17.9	19.5	21.4	19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37.0억원에서 2030년 39.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91.7억원(연평균 38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6조제1항)	-37.0	-37.6	-38.3	-39.0	-39.7	-191.7	-38.3
- 취득세	-15.5	-15.5	-15.5	-15.5	-15.5	-77.7	-15.5
- 재산세	-21.4	-22.1	-22.8	-23.5	-24.2	-114.0	-22.8

나.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46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

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35% 감면
 -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 (2020년 이후 추가 감면 시행, 2020~2022년은 취득세 및 재산세 45% 감면, 2023년 이후 50%로 감면율 확대)

□ (추계방법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0년 3.3억원에서 2023년 31.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13.6억원
- (재산세) 2020년 27.5억원에서 2023년 30.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3.6%

[표 4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0~2023년

	(단위: 억원)			
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30.8	35.6	47.1	61.9
- 취득세	3.3	5.5	14.1	31.3
- 재산세	27.5	30.1	33.1	30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47.6억원에서 2030년 52.7

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50.5억원(연평균 50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과밀억제권역 외 기업부설 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46조제2항)	-47.6	-48.8	-50.1	-51.4	-52.7	-250.5	-50.1
- 취득세	-13.6	-13.6	-13.6	-13.6	-13.6	-67.8	-13.6
- 재산세	-34.0	-35.2	-36.5	-37.8	-39.2	-182.7	-36.5

다.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6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-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시행(2021년 12월 28일 신설)
- 감면율: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
 -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및 재산세 65% 감면

□ (추계방법)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3년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 취득세 감면액: 7.9억원
- (재산세) 2023년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3년 재산세 감면액: 0.2억원

[표 6]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3년
(단위: 억원)

	취득세	재산세	합계
감면실적	7.9	0.2	8.1

주: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시행이나, 2022년 감면실적이 당초 제3항의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중복된 것으로 보아 2023년도 감면실적만 반영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8.1억원에서 2030년 8.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0.5억원(연평균 8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제46조제3항)	-8.1	-8.1	-8.1	-8.1	-8.1	-40.5	-8.1
- 취득세	-7.9	-7.9	-7.9	-7.9	-7.9	-39.5	-7.9
- 재산세	-0.2	-0.2	-0.2	-0.2	-0.2	-1.0	-0.2

라.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46조제4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 - 감면율: 취득세 60%, 재산세 50% 감면
 - 단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취득세 75%, 재산세 65% 감면

□ (추계방법)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20년 52.4억원에서 2023년 80.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, 최근 4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59.1억원
- (재산세) 2020년 11.4억원에서 2023년 12.9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4.0%

[표 8]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20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52.4	73.7	78.8	80.9
- 취득세	41.0	61.7	65.6	68.0
- 재산세	11.4	12.0	13.3	12.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74.0억원에서 2030년 76.6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76.2억원(연평균 75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제46조제4항)	-74.0	-74.6	-75.2	-75.9	-76.6	-376.2	-75.2
- 취득세	-59.1	-59.1	-59.1	-59.1	-59.1	-295.3	-59.1
- 재산세	-14.9	-15.5	-16.2	-16.8	-17.5	-81.0	-16.2

마.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78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○ 감면율

-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: 취득세 35% 감면
- 조성공사 시행 중인 토지: 재산세 35% (수도권 외 60%)

□ (추계방법)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2019년 286.8억원에서 2022년 332.1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158.4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276.1억원

○ (재산세) 2019년 100.3억원에서 2023년 107.8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1.8%

[표 10]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387.2	363.2	436.2	446.6	266.2
- 취득세	286.8	277.0	326.1	332.1	158.4
- 재산세	100.3	86.2	110.4	114.5	107.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389.8억원, 2030년 398.3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970.1억원(연평균 394.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산업단지 등 조성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78조제1항)	-389.8	-391.9	-394.0	-396.1	-398.3	-1,970.1	-394.0
- 취득세	-276.1	-276.1	-276.1	-276.1	-276.1	-1,380.4	-276.1
- 재산세	-113.8	-115.8	-117.9	-120.1	-122.2	-589.8	-118.0

바.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개발·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78조제2항)

- (제도개요)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·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- 감면을

-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: 취득세 35%, 재산세 35%(비수도권 60%) 감면
-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: 5년간 재산세 35%(비수도권 60%) 감면

- (추계방법)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·조성 후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

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19년 8.6억원에서 2020년 12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23년 9.2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8.5억원
- (재산세) 2019년 35.3억원에서 2023년 16.3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-17.6%

[표 12]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야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43.9	44.5	34.3	27.3	25.5
- 취득세	8.6	12.5	7.7	4.6	9.2
- 재산세	35.3	32.0	26.6	22.7	16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17.6억원, 2030년 12.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74.6억원(연평균 14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산업단지 등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분양임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78조제2항)	-17.6	-16.0	-14.7	-13.6	-12.7	-74.6	-14.9
- 취득세	-8.5	-8.5	-8.5	-8.5	-8.5	-42.6	-8.5
- 재산세	-9.1	-7.5	-6.1	-5.1	-4.2	-32.0	-6.4

사.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78조제3항)

□ (제도개요)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○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○ 감면율

-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: 취득세 35%, 재산세 5년간 35%(비수도권 60%) 감면
-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(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): 5년간 재산세 35%(비수도권 60%)

□ (추계방법)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○ (취득세) 2019년 55.9억원에서 2021년 120.5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(2022년 41.9억원)하여 2023년 68.7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66.7억원

○ (재산세) 2020년 36.0억원에서 2023년 16.5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최근 4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-22.9% (2019년 재산세 감면액 (75.4억원)은 제외)

[표 14]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야
2019~2023년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31.3	82.3	149.1	63.6	85.2
- 취득세	55.9	46.3	120.5	41.9	68.7
- 재산세	75.4	36.0	28.6	21.7	16.5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74.2억원, 2030년 69.3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357.4억원(연평균 71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산업단지 등 개발·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78조제3항)	-74.2	-72.5	-71.2	-70.1	-69.3	-357.4	-71.5
- 취득세	-66.7	-66.7	-66.7	-66.7	-66.7	-333.4	-66.7
- 재산세	-7.5	-5.8	-4.5	-3.5	-2.7	-24.0	-4.8

아.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78조제4항)

- (제도개요)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, 유치지역 또는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단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- 감면율

-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: 취득세 50%, 재산세 5년간 35%(비수도권 60%)
-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: 취득세 25%

- (추계방법)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19년 1,905.3억원에서 2022년 3,242.2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

이후 감소하여 2023년 1,951.3억원으로 연도별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－ 최근 5년간 취득세 연평균 감면액: 2,244.1억원

○ (재산세) 2019년 452.2억원에서 2023년 386.9억원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－ 최근 5년간 재산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율: -3.8%

[표 16]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,357.6	2,974.1	1,989.2	3,678.1	2,338.3
－ 취득세	1,905.3	2,556.1	1,565.6	3,242.2	1,951.3
－ 재산세	452.2	417.9	423.6	435.9	386.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,588.4억원, 2030년 2,538.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2,815억원(연평균 2,56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78조제4항)	-2,588.4	-2,575.2	-2,562.5	-2,550.4	-2,538.7	-12,815.1	-2,563.0
－ 취득세	-2,244.1	-2,244.1	-2,244.1	-2,244.1	-2,244.1	-11,220.6	-2,244.1
－ 재산세	-344.2	-331.1	-318.4	-306.3	-294.5	-1,594.5	-318.9

자.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,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연장
(안 제78조제9항)

□ (제도개요)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면허세
및 재산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연장

- 2023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
- 감면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
□ (추계결과)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 중과배제 적
용기한 연장은 2024년 시행으로 현재 지방세 감면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
향후 지방세 감면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- 해당 규정에 따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동 비용
추계는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